

서식 V-16 계약제교원(기간제교원, 명예교사) 계약서 (예시)

계약제교원(기간제교원) 채용계약서

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장을 “사용자”라 하고, 계약제교원을 “근로자”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

(사용자) 주 소

학교장

(근로자) 주 소
성명
주민등록번호

제2조(임무)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“근로자”的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근로자”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.
-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.
- ③ “업무분장”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채용구분 및 채용사유) (“계약직교원의 종류 명기, 채용 근거조항 및 사유 명기”) <예시: 기간제교원, 명예교사>, (“교육공무원법 제32조1항 ○호에 의한 ○○ 휴직자 ○○○의 후임 보충”)<예시: 1호 - 육아, 동반, 고용, 질병, 간병, 연수 등의 휴직, 2호 - 파견, 연수, 정직, 직위해제, 3호 - 정원외기간제교원(미배치기간제교원포함) 등>

제5조(호봉 및 보수지급방법)

- ① “근로자”的 호봉은 ○○호봉이며,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(비상환액) 등을 원천 징수한다. 이 경우 “근로자”的 호봉회정 및 승급은 ‘공무원보수규정’에 의한다.
-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.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③ “근로자”的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.
- ④ “근로자”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.
- ⑤ “근로자”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⑥ 기타, “근로자”的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.
- ⑦ “근로자(기간제교원)”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,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